#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大田直轄市 教育監

2. 件 名: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

3. 案 件 要 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年 2月

文教 社會 委 員 會專門委員 金 鎭 鎬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 檢討報告書

1994 . 2 .

文 教 社 會 委 員 會專 門 委 員

####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 檢 討 報 告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1月 25日 大田直轄市 教育監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4年 1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案理由

教育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直轄市立學校中 分校長 統・廢 合에 따라 폐지되는 分校長의 명칭과 위치등을 削除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 第2條의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명칭과 위치란의 아래 내용을 削除함.

구 분	명 칭	위 치
국	산서국민학교 어남분교장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 52-1
	대덕국민학교 탄 <del>동분</del> 교장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동 174

## 3. 檢討意見

- 이 改正 條例案은 신흥 주택지의 개발 및 도심 空洞化 현상등 도심의 與件變化에 따라 그규모면에서 존치가 不合理한 分校長 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임.
- 본條例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分校長은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산서국민학교 어남 分校長과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대덕 국민 학교 탄동分校長으로써 어남 分校長은 4개 학년에 9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교직원 3인), 탄동 分校長은 5개 학년에 24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음. (교직원 6인)
- 當初 分校長의 설치는 과거 人口가 急激히 증가하던 7~80년대 過密學級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通學便宜提供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제는 人口增加率의 鈍化와 移農現象등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分校의 교육적 측면이나 운영적 측면등을 고려할때 부분적으로 分校存置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하겠음.
- 이 따라서 本 改正 條例案은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가 불합리한 分校長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分校 운영의 단점 즉 複式修業의 운영에 따른 교과과정의 불합리성, 소규모 학교에서의 장기간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競爭性 결여, 기타 학교 운영적 측면에서의 經費節減效果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本校와의 通學距離등을 감안하여 通學便宜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大田直轄市 教育監

2. 件 名: 大田直轄市 高等學校 學群設定에 관한 條例

廢止 條例案

3. 案 件 要 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年 2月

文教 社會 委 員 會專門委員 金 鎭 鎬

大田直轄市 高等學校 學群設定에 관한 條例 廢止 條例案

# 檢討報告書

1994. 2.

文 教 社 會 委 員 會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 高等學校 學群設定에 관한 條例 廢止 條例案

## 檢 討 報告

이 廢止 條例案은 1994年 1月 25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4年 1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高等學校 學群 設定에 관한 事項을 條例로 정하여 施行하던 것을 敎育法 施行令 第 112條의 8 第2項(大統領令 第14,004號, '93. 11. 13)의 改正에 따라 學群設定은 敎育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監이 이를 정하여 告示하도록 되어 있어 本 條例를 廢止코자 하는 것임.

## 2. 主要骨子

大田直轄市 高等學校 學群設定에 관한 條例를 廢止함.

### 3. 檢討意見

○ 이 廢止 條例案은 高等學校의 學校群 設定에 관한 事項을 規定한 教育法 施行令 第 112條의8 第2項이 지난 1993年 11月 13日 大統領令 第 14004號로 改正됨에 따라 關聯條例 를 廢止하려는 內容임. ○ 따라서 本 案件은 關聯上位法의 改正에 따라 그 存置 必要性이 없어진「大田直轄市 高等學校 學校群 設定에 관한 條例」를 廢止하려는 內容으로써 그간 우리市 管內는 高等學校의 學群이 單一學群으로 運營되어 왔던 점을 勘案할 때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大田直轄市 教育監

2. 件 名: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廢止 條例案

3. 案 件 要 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年 2月

文教 社會 委 員 會專門委員 金 鎖 網票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廢止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4. 2.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廢止條例案

## 檢 討 報告

이 廢止 條例案은 1994年 1月 25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 出되어 1994年 1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中學校 無試驗 入學 抽籤 方法과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事項을 條例로 정하던 것을 改正된 敎育法 施行令 第69條 第5項(大統領令第 14,004號, '93. 11. 13)의 規定에 依據 이를 고시로 施行토록 된바, 條例로 規定된 事項을 고시로 制定 施行하기 위하여 본 條例를 廢止코자 하는 것임.

## 2. 主要骨子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를 廢止함.

## 3. 檢討意見

○ 이 廢止 條例案은 지난 '93年 11月 13日 中學校의 學群 및 抽 籤方法등에 관한 事項등을 規定하고 있던 敎育法 施行令 第 69 條 5項이 改正됨에 따라 本 條例를 廢止하려는 內容으로써

- 中學校의 學校群 및 中學區, 抽籤方法등을 規定한 教育法 施行令 第69條3項 및 5項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中學校의 入學支援者에 대하여는 地域別, 學校群別로 抽籤에 의하여 그 入學할 學校를 配定하며, 다만 거리・교통이 通學上 극히 불편한地域에는 中學區를 設定하도록 하고 있었음. (敎育法 施行令第69條 3項)
- 이 경우 從前에는 中學校의 學校群및 中學區, 抽籤方法등을 市・道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市・道議會의 議決事項으로 規定하고 있었으나 行政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위한다는 側面에서 敎育監이 敎育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정하여 告示토록 變更한 것이 앞서 報告드린 敎育法 施行令 第 69條 5項의 主要 改正內容이 되겠음.
- 따라서 本 案件은 關聯 上位法의 改正에 따라 그 存置 必要性 없어진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를 廢止하려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되.